

부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계획보고

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반부패 수범사례 중 부정위험 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계획을 보고드립니다

□ 개요

○ 추진배경

- (관리 및 대응체계 미흡) 부정(Fraud)이 공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임에도 부정위험의 체계적 관리·대응이 미흡
- (부정위험 관리체계 개선 필요) 기존 구축한 상시모니터링 및 종합감사 등을 포함하여 입체적인 부정위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

□ 주요 내용

○ 부정(Fraud) 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

- (회사 고유 부정개념의 재정립) 임직원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회사의 자산 또는 자원을 유용 또는 오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
- (부정 분류체계 정립) 부정의 유형을 「부패」, 「자산 횡령」, 「허위보고」로 분류

○ 부정위험 요소 도출

- 업무 분석을 통해 30개의 각 유형별 세부 위험요소<별첨 1> 도출

< 부정유형별 위험요소 현황 >

구분	합계	부패			자산횡령				허위보고	
		뇌물수수	이해상충	소계	현금절도	자산유용	허위지출	소계	문서위조	소계
위험요소	30	11	1	12	8	6	1	15	3	3

○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마련

- 부정위험 요소별로 부정 징후와 세부점검을 위한 **체크리스트(30개)** 마련

<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예시 >

NO	부정위험	부정징후	점검방법
31	직원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 금액을 관련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	1. 분양계약자의 환급계좌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잦은 경우 2. 분양계약자의 환불이 2개 이상의 계좌로 이루어지거나, 분양계약자는 다르나 계좌번호가 동일한 경우 3. 분양계약자의 환급계좌가 변경되어 지급이 발생한 후 다시 재변경된 경우	* 인사마스터의 직원 정보 데이터를 수령한 후 분양계약자 데이터와 주소 또는 우편번호 등으로 연결하여 상호 일치되는 건을 추출 및 확인 <분양계약자의 계좌 번호와 다른 계좌로 지출된 경우> 1. 지출결의서 상 지급계좌가 분양계약자 정보에 존재하지 않는 계좌번호인 경우 2. 지출결의서 상 분양계약자는 다르나 지급계좌가 동일한 경우 3. 지출결의서 상 한명의 분양계약자가 다수의 지급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

○ 부정위험 관리체계 수립 및 전략목표 등 설정

- (부정위험 관리체계 수립) 부정에 대한 「예방-탐지-조사」의 순환체계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정사고에 대한 사전적·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- (전략목표 등 설정) 부정위험 관리체계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, 과제이행을 통해 부정위험 관리의 전략목표인 “부정부패 제로(Zero) 달성”을 지원
 - 추진영역별 전략방향을 설정하고,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

제(16개)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이행 추진

< 추진영역별 세부추진과제 예시 >

전략목표	전략방향	추진영역	세부추진과제
부정위험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부정부패 제로 달성	부정위험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개선	부정예방	•부정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7개 - 감사실(연 1회)
	부정위험요소 진단 운영	실태조사	•부정위험 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 등 4개 - 감사실(연간)
	부정위험 관리체계 효과적 운영	부정조사	•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를 마련<별첨 2> - 감사실(수시)
	부정위험 관리체계 운영 안정화	모니터링	•부정위험 관리체계 관련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4개 - 감사실(연 1회)

□ 주요 성과

- (대외 신뢰도 등 강화) 부정위험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부정부패 “0” 달성으로 회사의 대외 신뢰도 및 투명성 강화 기대
 - 최근 부정·부패 적발사례 없음
- (부정위험 관리지침 제정) 부정위험 관리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향상으로 부정발생 리스크 최소화<별첨 3>
- (성과 공유 및 피드백) 부정위험 관리체계 활동에 대해 성과 평가 후 피드백 예정('16년도 하반기)

- 첨 부 : 1. 부정유형별 주요 위험요소 1부.
2. 부정조사 수행절차 1부.
3. 부정위험 관리지침 1부.